

‘정액 감세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 등을 위한 추가 급부금 (‘조정 급부금(부족액 급부)’) 안내

‘조정 급부금 (부족액 급부)’ 이란 ?

조정 급부의 ‘부족액 급부’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당초 조정 급부 지급액이 부족해질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급부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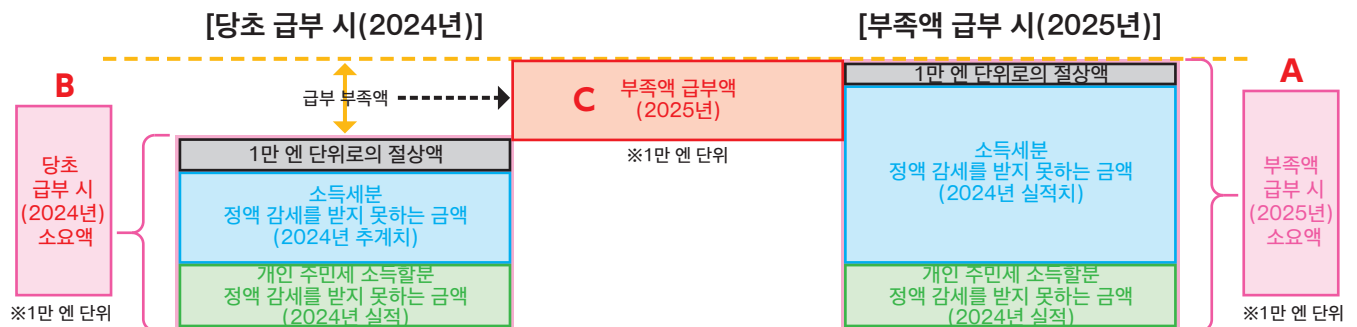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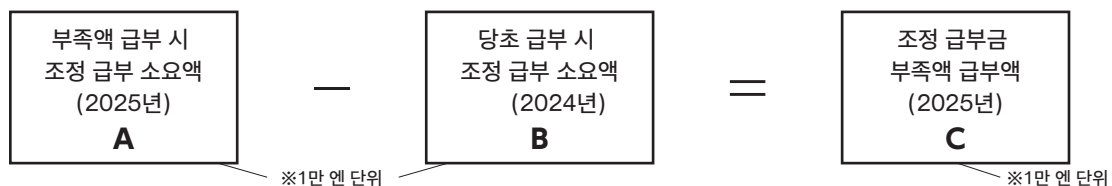
대상자 I 당초 조정 급부 산정 시 2023년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한 추계액(2024년분 추계 소득세액)을 이용하여 산정한 내용 등에 따라 **2024년분 소득세 및 정액 감세 실적액 등이 확정된 후에 본래 급부해야 할 소요액과 당초 조정 급부액 사이에서 차액이 발생한 분**에 해당 차액이 지급됩니다.

※ ‘정액 감세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 께는 해당 감세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2024 년도에 조정 급부금 (당초 조정 급부)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예

- 2023년 소득에 비해 2024년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2024년분 추계 소득세액(2023년 소득)’ > ‘2024년분 소득세액(2024년 소득)’이 되신 분
- 자녀 출생 등 부양 가족이 2024년 중에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분 정액 감세 가능 금액(당초 급부 시)’ < ‘소득세분 정액 감세 가능 금액(부족액 급부 시)’이 되신 분

이미지



※소득세, 개인 주민세를 합해 이미 4 만 엔의 정액 감세를 받고 있는 분, 또는 합계 소득금액 1,805 만 엔을 초과하는 분은 조정 급부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 ‘부족액 급부 시 조정 급부 소요액’ (A) 이 ‘당초 급부 시 조정 급부 소요액’ (B) 을 밑돌 경우, 잉여액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 II 본인 및 부양 가족 등으로서 정액 감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저소득 세대를 위한 급부 (2023년도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대한 급부(7만 엔), 2023년도 주민세 균등할 한정 과세 세대에 대한 급부(10만 엔), 2024년도에 새롭게 주민세 비과세 세대 혹은 균등할 한정 과세된 세대에 대한 급부(10만 엔)) 대상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에도 해당하지 않았던 분께 1인당 원칙적으로 4만 엔(정액)이 지급됩니다.

※2024년 1월 1일 시점에 국외 거주자였던 경우에는 3만 엔

예

- 청색 사업 전임 종사자, 사업 전임 종사자(백색)인 분
- 합계 소득 금액이 48만 엔을 초과하는 분

지급 절차

대상자 분들께는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시에서 입금 계좌를 파악하고 있는 분(당초 조정 급부의 수급자 또는 ‘공금 수취 계좌’※를 등록하신 분)→‘지급 통지서’
기일까지 사퇴 신청 또는 수취 계좌의 변경 등이 없이 통지서의 내용대로 급부금을 받는 경우, **절차 없이 급부금을 계좌 이체합니다.**
※‘공금 수취 계좌’란, 마이넘버와 함께 급부금 등의 수취 계좌로서 국가에 등록한 계좌를 말합니다.
- 상기 이외의 분→‘지급 확인서’
급부금을 받으려면 확인서 반송이 필요합니다. 심사 후 순차적으로 급부금을 계좌 이체합니다 (확인서 접수 후, 약 4주 후에 이체).

●2024년에 전출입을 반복하는 등, 2024년도의 개인 주민세 과세 정보를 우쓰노미야시가 파악할 수 없는 분

원칙적으로 부족액 급부 대상인 경우 대상자의 현주소로 서류가 발송되지만, 우쓰노미야시가 당초 조정 급부 정보 및 과세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대상자로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안내 전단 앞면의 **예**시를 확인해 주시고, 부족액 급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은 아래의 콜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지급 대상인 분께 신청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신청 서류를 수령하신 분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서류를 반송해 주십시오. 내용을 심사한 후 지급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별도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기타

‘정액 감세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 등에 대한 추가 급부금(‘조정 급부금(부족액 급부)’ 관련 ‘보이스피싱’ 및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십시오!

자택이나 직장으로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및 정부(소속 직원) 등으로부터 의심스러운 전화나 우편물이 온 경우, 거주하시는 지역 내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 상담 전용 전화(#9110)로 연락해 주십시오.

또한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및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내용의 메일을 받은 경우, 메일에 기재된 URL에 접속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신속히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우쓰노미야시 조정 급부 (부족액 급부금) 콜센터



0120 - 483 - 049



choseikyufu_jimukyoku@nta.co.jp

접수 시간 : 오전 9 시 ~ 오후 5 시 (토 , 일 , 공휴일 제외)

페이지 ID : 1040591



▲우쓰노미야시 홈페이지

※자세한 내용은 우쓰노미야시 홈페이지, 내각관방 홈페이지 ‘새로운 경제를 위한 급부금 및 정액 감세 일체 조치’도 참조해 주십시오.